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 자료제공

중소기업청은 현행 소기업 범위 제도가 기업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업이 인위적으로 성장을 꾀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실제로는 성장한 기업이 소기업에 잔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더불어 필요성이 감소한 관계기업 명단 인터넷 게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편집자 주 -

주요내용

가. 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 제8조)

기업의 성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소기업 범위 기준을 현행 상시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변경함.

나. 관계기업 기업 명단의 인터넷 게시 폐지(안 제10조 제2항)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시스템이 개선(확인서가 범용의 목적으로 발급되고, 개별 기업이 자료를 입력하면 관계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까지 자동으로 확인)되어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할 필요성이 감소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함.

다. 관계기업에서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신기술금융사업자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오타 수정(안 제3조의2 제3항 제2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2호 중 “신기술금융사업자”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중소기업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4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규모 기준”을 “중소기업 규모 기준”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제8조제1항과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제8조제1항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등
1. 식료품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	C14	
4. 가죽, 가방, 신발	C15	
5.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	C19	
6. 화학물질,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의약품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C23	
9. 1차 금속	C24	
1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	C26	
11. 전기장비	C28	
12. 자동차, 트레일러	C30	
13. 전기·가스·수도사업	D	
14. 농업, 임업 및 어업	A	
15. 광업	B	
16. 담배	C12	
17. 섬유제품(의복 제외)	C13	
18. 목재, 나무제품(가구 제외)	C16	
19. 펄프, 종이, 종이제품	C17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C18	
21.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C22	
22. 금속가공제품(기계, 가구 제외)	C25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C27	
24. 기타 기계, 장비	C29	
25. 기타 운송장비	C31	
26. 가구	C3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등
27. 기타 제품	C33	80억원 이하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보험업	K	
31. 도·소매업	G	50억원 이하
32. 출판·영상·정보	J	
33. 하수·폐기물 처리업	E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임대업	L	
35. 전문·과학·기술	M	
36. 사업서비스업	N	
37. 예술·스포츠·여가	R	10억원 이하
38. 숙박·음식점업	I	
39. 교육서비스업	P	
40. 보건·사회복지	Q	
41. 개인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p> <p>1. (생략)</p> <p>2.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p> <p>3. ~ 5. (생략)</p> <p>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p> <p>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p>	<p>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p> <p>_____</p> <p>_____.</p> <p>1. (현행과 같음)</p> <p>2. _____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 8 조 (소 기 업 과 중 기 업 의 구 분) ① _____ 중소기업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4의 기준——.</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p> <p>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p> <p>② 제2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p>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 	<p>〈삭 제〉</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p> <p>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p> <p>제10조(확인 방법 등) ① (생략)</p> <p>②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명단을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p> <p>③ (생략)</p>	<p>제10조(확인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